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52 발의연월일: 2025. 4. 23.

발 의 자:성일종·최수진·이종배

고동진 • 이종욱 • 인요한

박덕흠 • 주호영 • 서범수

김상욱 · 송석준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출자, 용적률 완화 등의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대 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현행법에는 다자녀 가구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과 같이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 가적인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 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을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이 경우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나. 그 밖에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	
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하여야 한다.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u>경</u>	1 <u>경</u>
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	<u>우</u>
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u>공급</u>	
<u><신 설></u>	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
	급. 이 경우 다자녀 가구
	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 <신 설></u>	나. 그 밖에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